

● 제305회 ●
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**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 
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**

**검 토 보 고 서**

(의안번호: 3085)

2022. 2. 9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수 석 전 문 위 원

## [서울특별시장 제출]

의안번호 3085

### I. 조례안 개요

#### 1. 제안경위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출일 : 2022년 1월 21일
- 다. 회부일 : 2022년 1월 25일

### 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# 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」는 서울역 주변 무료급식 단체의 실내 급식 시행 및 노숙인들의 자존감 향상을 위해 2010년 설치한 무료급식장으로 노숙인 무료급식을 위한 장소 제공 및 일부 조리 등을 시행하여 노숙인의 급식을 제공하는 민간위탁 운영 시설로서,
- 위탁기간이 2022년 4월 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, 재위탁을 통해 노숙인들의 무료급식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위탁시설 개요

- 시설명 :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(개소일자 : '10. 4. 9.)
- 위치 : 용산구 한강대로 377
- 규모 : 연면적 599.5m<sup>2</sup>(지상1층/4층)
  - 급식장 401.5m<sup>2</sup>(급식실, 조리실, 세척실, 사무실 등), 급식대기소 198m<sup>2</sup>
- 수탁기관 : (사복)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(대표 : 이 철)
- 운영인력 : 시설장 포함 4명
- '22년 예산 : 308,744천원(민간위탁금)

### 나. 위탁개요

- 위탁기간 : '22. 4. 9. ~ '25. 4. 8.(3년)
  - ※ 사전절차 이행에 따라 위탁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
- 위탁업무
  - 민간급식단체의 '실내급식장' 이용에 따른 사무관리 및 급식편의 제공
  - '실내급식장' 건물 및 시설물의 관리
  - 기타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재위탁)

### 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  -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2호

○ 민간위탁 추진현황

구분	수탁기간	수탁자	수탁자 선정방법	비고
1차	'10.04.09.~'13.04.08.	(사)서울노숙인시설협회	지정 위탁	
2차	'13.04.09.~'16.04.08.	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	재위탁	공개모집
3차	'16.04.09.~'19.04.08.	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	재계약	
4차	'19.04.09.~'22.04.08.	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	재위탁	공개모집

※ 2차 민간위탁 시 시의회 동의 시행(제242회 정례회, '12. 11. 23.)

라. 민간위탁(재위탁) 필요성

- 무료급식장을 이용하는 민간 급식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양질의 노숙인 급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, 노숙인 무료급식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
- 현 수탁기관의 따스한채움터 운영상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, 재계약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함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**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**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○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

**제8조(지원대상 사업)**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2.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서비스

**제9조(노숙인시설의 설치·운영)**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·자립과 사회복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·운영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○ 따스한채움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(자활지원과-10606, 21. 9. 2.)

○ 제8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('21. 10. 6.) : 적격

### Ⅲ. 검토 의견

#### 1 동의안의 개요

- 본 동의안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 (이하 ‘민간위탁 조례’)¹) 및 따스한채움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²)에 따라 서울특별시 따스한 채움터(이하 ‘따스한 채움터’)의 민간위탁(재위탁)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
#### 2 민간위탁 대상여부 검토

- 따스한 채움터는 「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」 ³) 제8조 제2호에 따라 노숙인에게 무료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급식장으로 동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해 시장이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 - 민간급식단체의 ‘실내급식장’ 이용에 따른 사무관리 및 급식편의 제공
  - ‘실내급식장’ 건물 및 시설물의 관리
  - 기타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- 「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2항⁴)

---

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 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
③~⑤ <생략>

2) 자활지원과-10606, 21. 9. 2.

3) 제8조(지원대상 사업)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  
1.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서비스    2.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서비스    3. ~ 10. <생략>

에서 ‘노숙인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’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「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<sup>5)</sup> 및 제6조<sup>6)</sup> 등에서는 ‘시장의 소관 사무 중 노숙인 등의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’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노숙인 급식장 및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- 따스한채움터는 그동안 4차에 걸쳐 민간위탁을 수행해 왔으며 ‘13년 이후 ‘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’에서 재위탁과 재계약을 통해 계속하여 수탁해왔음.

**<표> 따스한채움터 민간위탁 추진경과**

구분	수탁기간	수탁자	수탁자 선정방법	비고
1차	'10.04.09.~'13.04.08.	(사)서울노숙인시설협회	지정 위탁	
2차	'13.04.09.~'16.04.08.	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	재위탁	공개모집
3차	'16.04.09.~'19.04.08.	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	재계약	
4차	'19.04.09.~'22.04.08.	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	재위탁	공개모집

### 3 종합 검토의견

- 노숙인 급식지원시설의 민간 위탁 주요 성과는 민간기관들을 연계하여 무상급식을 제공한 것으로 ‘21년 12월 말 기준 14개 단체가 주당 14회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, ‘21년 급식 인원은 총 165,735명(1일 평균 454명)임. 코로나19 장기화로 숙식이 불안정한 노숙인의 어려움이

4) 제9조(노숙인시설의 설치·운영)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5)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6)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가중되는 상황에서 무료급식소 운영은 노숙인의 안정적 지원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.

**<표> 2021년 따스한채움터 급식시행 현황**

구분	월	화	수	목	금	토	일
중식	감리교 힐링푸드	따스한 채움터 대체급식	경제회복센터	KT&G (사회복지공동모금회)	(사)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	(사)나눔미	2주 보궁회 3주 함께하는사람들 마지막주 우량아들 / 따스한채움터 대체급식
석식	3주 일진산업 / 따스한채움터 대체급식	사랑의교회	원봉공회	(사)나눔미	사랑실천공동체	새사랑교회	서울꽃동네

- 하지만 그간 동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면서 수탁기관의 방만한 운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, 최근 3년간 해당 시설의 감사 및 지도·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 문제들이 확인되었음.

**<표> 최근 3년간 따스한채움터 지도·감독 사항 주요 지적사항**

일시	지도 감독기관	지적사항
'19.03.29	서울시청 (현대회계법인)	·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납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음
'19.12.12	서울시청 자활지원과	· 10만원 미만 소액지출 건에 대한 지급품 관련 서류 미작성
'20.12.16	서울시청 자활지원과	· 시설 관리대장 관리 미흡 · 시간 외 근무 명령서 미관리
'21.7.5~7.7	서울시청 자활지원과	· 예산·회계 관리(25건), 종사자 관리(10건), 시설 관리·운영(7건), 일자리 사업(8건) 총 50건 발생

- 이외에도 시설장 채용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나타나 시설장의 근로계약이 무효 처분<sup>7)</sup>되었으며, 언론보도<sup>8)</sup>를 통해 밝혀진 직장 내 괴롭힘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최종 통보<sup>9)</sup>되었음.

7) 수탁법인 따스한채움터 시설장 불승인 통보(자활지원과, 2021.4.8)

8) “씩은 반찬통 씻어라”.. 왕처럼 군 무료급식소장(SBS 8시 뉴스, 2021.5.4)

9)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통보(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, 2021.7.16)



- 한편 본 동의안은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으나 민간위탁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운영상 문제점 및 민원 제기사항 등의 사유로 부결된 바 있음.
- 이에 서울시는 본 사무를 ‘시 직영’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<sup>10)</sup> 하였으나 ‘공무원 순환보직에 따른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외부 후원이 불가하여 현 수준의 급식 제공 시 별도 급식비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, 사전절차를 위한 시간 소요로 일시 운영 중단 등 다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’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- 서울시는 따스한채움터 운영상 문제점을 고려하여 재계약이 아닌 공개 모집을 통한 재위탁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나 현 수탁자가 9년간 시설을 운영한 만큼 적절한 수탁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 동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‘시설 자체의 성과 점검 미흡 및 세부 운영 규정 작성이 미흡’한 것으로 나타난 바, 향후 수탁기관 선정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임.

#### 4 종합의견

- 본 동의안은 「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라 노숙인에게 무료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식소 운영을 민간위탁(재위탁)하는 사항을 사전에 서울시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10) 따스한채움터 운영 개선방안 검토 보고(자활지원과, 2022.1.26.)

- 노숙인에게 실내에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동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시설 운영에 적절한 지도·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방만한 운영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향후 재위탁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동 시설의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지도·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문 의 처

허아름 입법조사관 (02-2180-8145)